

의안 번호	1815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발 의 일 자 : 2021. 5. 21.
- 발 의 자 : 이명녀의원 외 9명
-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10. 1.(금)
-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10. 13.(수)

###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는 구도심으로 낙후된 건물로 인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A-04 동동, B-04 교동, B-05 복산, B-10 학성, B-11 남외, C-01 우정, 반구 등)등으로 인한 공사장 환경의 위험한 재해 요소가 산재해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 환경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사장 안전관리(안 제3조)
-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안 제4조)
-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안 제5조)

### 4. 근거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사각 지대인 공사장 주변을 어린이, 학생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와, 생활환경 위해 요소 관리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

○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은 상위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가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재건축등으로 인한 석면제거작업 시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우리 중구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및 대단위 아파트 주변 공사장의 학생 통학로와 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공사문화 환경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제정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6. 참고자료

※ 조례 제정 현황 (2021. 9. 30. 기준)

- 울산 최초제정 (우리구)

- 전국 총 8개 시·군·구 제정